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
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663
----------	-----

2021. 3. 23.(화)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자: 최경천 의원
나. 발의일자: 2021년 3월 3일
다. 회부일자: 2021년 3월 5일
라. 상정일자: 2021년 3월 15일

(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최경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안전보건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적용대상(안 제3조)
- 교육감의 책무(안 제4조)
- 근로자의 의무(안 제5조)
- 기본계획(안 제6조)
- 시행계획(안 제7조)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(안 제8조)
- 명예산업안전감독관(안 제9조)
- 안전보건교육 등(안 제10조)
- 안전보건표지 등(안 제11조)
- 안전보건관리 등(안 제12조)
- 실태조사(안 제13조)
-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강조기간 지정 · 운영(안 제14조)
- 재정지원(안 제15조)
- 협력체계(안 제16조)
- 시행규칙(안 제17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흥만표)

- 본 조례안은 도내 교육기관 및 각급학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안전보건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.
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, 정의, 적용 대상을 각각 정하고, 안 제4조와 안 5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와 근로자의 의무에 대하여 정하였음.
-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된 이 조례안의 적용대상 근로자 인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, 공립유치원,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청소, 시설관리,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4,035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.
-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5년마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8조에서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‘산업안전보건위원회’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, 안 제9조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,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여 ‘명예산업안전감독관’을 두도록 하였음.
-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, 안 제13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안전 보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14조에서는 교육감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강조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안 제15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음.

- 안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도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, 안 제17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.
-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어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근로 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교육기관” 이란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교육 행정기관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「초·중등 교육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.
2. “산업재해”란 「산업안전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로서,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·설비·원재료·가스·증기·분진 등에 의하거나,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.
3. “안전보건”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.
4. “근로자”란 교육기관에서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법 적용을 받는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.
5. “근로자 대표”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,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교육기관의 근로자에게 적용한다.

제4조(교육감의 책무)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 교육기관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근로자의 의무) 근로자는 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본계획)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
2. 산업재해 예방과 대책, 근로자의 생명보존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추진 사업
3.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
4.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

제7조(시행계획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
2.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매뉴얼 제작·보급
3.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관련 실태조사

4.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련 교육
5. 근로·작업환경 관리
6. 근로자 건강 진단 및 건강관리
7.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·재활·심리상담 지원
8.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
9.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안전보건문화 조성
10.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) ① 교육감은 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충청북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제6조와 제7조에 관한 사항
 2.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3.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·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명예산업안전감독관) ① 교육감은 근로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둔다.

-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동현장의 노동안전보건 조치가 이 조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도한다.
-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의 점검 및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0조(안전보건교육 등) ① 교육감은 관계법령 및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다음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.

1. 법정 선임자 직무교육
2.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
3.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
4.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
5. 특별안전보건교육
6.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

-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, 교육 대상과 교육시간은 관계법령 및 그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교육감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1조(안전보건표지 등) 교육감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, 공정, 유해 물질취급 등 장소에 안전보건표지 등을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·게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2조(안전보건관리 등)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를 하여야 한다.

- ②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는 사업장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그 결과에 따라 관리감독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장의 개선요구 사항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관리감독자는 작업 중지 시 개선요구에 따라 안전보건을 우선 확보하고,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장은 근로자 대표와 협의 후 해당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실태조사)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7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안전보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4조(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강조기간 지정·운영) 교육감은 교육기관 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5조(재정지원) 교육감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6조(협력체계)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도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령

□ 근로기준법

[시행 2021. 1. 5.] [법률 제17862호, 2021. 1. 5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 3. 20.>

1. “근로자”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.
2. “사용자”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,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.

□ 산업안전보건법

[시행 2021. 1. 16] [법률 제17326호, 2020. 5/ 26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산업재해”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·설비·원재료·가스·증기·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.
2. “중대재해”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.

제6조(근로자의 의무)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, 사업주 또는 「근로기준법」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,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.

제15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)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2.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3.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 4.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5.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 6.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 7.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
 8.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
 9.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·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(이하 “안전보건관리책임자”라 한다)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·감독한다.
-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(안전관리자)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·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(이하 “안전관리자”라 한다)을 두어야 한다.

-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, 안전관리자의 수·자격·업무·권한·선임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

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(이하 “안전관리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18조(보건관리자)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·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(이하 “보건관리자”라 한다)을 두어야 한다.

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, 보건관리자의 수·자격·업무·권한·선임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(이하 “보건관리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24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)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위원회(이하 “산업안전보건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
2.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

3.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·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·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-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-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, 이 법에 따른 명령, 단체협약,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·의결해서는 아니 된다.
-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.
-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,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5조(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)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.

1.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
2.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3.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
4.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(이하 “안전보건관리규정”이라 한다)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.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
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,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[시행 2021. 4. 1.] [대통령령 제31004호, 2020. 9. 8., 일부개정]

제10조(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) ① 법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“안전·보건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<개정 2010. 7. 12., 2010. 11. 18., 2014. 3. 12., 2016. 10. 27. >

1.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·감독하는 작업(이하 이 조에서 “해당 작업”이라 한다)과 관련된 기계·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·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
2.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·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·사용에 관한 교육·지도
3.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
4.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·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·감독
5.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·조언에 대한 협조

가. 산업보건의

나. 안전관리자[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(이하 “안전관리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]

다. 보건관리자[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(이하 “보건관리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]

라. 안전보건관리담당자(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)

6.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·위험 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

7.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·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·장비·예산,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” 이란 별표 2와 같다.

④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“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<개정 2010. 7. 12., 2010. 11. 18.>

1.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 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

2. 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유해·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(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인 경우로 한정 한다)

3.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
[전문개정 2009. 7. 30.]

[시행일] 제10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

1.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: 2018년 9월 1일
2.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: 2019년 9월 1일

제13조(안전관리자의 업무 등) ①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7. 12., 2012. 1. 26., 2014. 3. 12.>

1.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·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·의결한 업무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(이하 “안전 보건관리규정”이라 한다)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

2.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·기구등(이하 “안전인증 대상 기계·기구등”이라 한다)과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·기구등(이하 “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·기구등”이라 한다)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2.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3.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4. 사업장 순회점검·지도 및 조치의 건의
5.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·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·지도
6.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·관리·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7.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8.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·유지
9.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 -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·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.
 -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·지도를 받을 수 있다. <신설 2012. 1. 26.>
 -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 1. 26., 2014. 3. 12.>
 - ⑤ 안전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17조(보건관리자의 업무 등) ①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 1. 26., 2014. 3. 12.>

1.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
2. 안전인증대상 기계·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·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(保護具)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
3.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 · 지도
 4.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· 지도
 5.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(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)
 6.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· 지도
 7.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(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 - 가.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
 - 나.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
 - 다. 부상 ·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
 - 라.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
 -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
 8.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 · 지도
 9. 사업장 순회점검 · 지도 및 조치의 건의
 10.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·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 · 지도
 11.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· 관리 ·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 · 지도
 12.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 · 지도
 13.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· 유지
 14.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
-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 1. 26., 2014. 3. 12.>
-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 제2항과 제13조 제2항 · 제3항을 준용 한다.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

□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2. 1. 27] [법률 제17907호, 2021.1.26., 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중대재해”란 “중대산업재해”와 “중대시민재해”를 말한다.
2. “중대산업재해”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.
 - 가.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
 - 나.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
 - 다.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
3. “중대시민재해”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. 다만,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.
 - 가.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
 - 나.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
 - 다.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

제3조(적용범위)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(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2.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3.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
4.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② 제1항제1호·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조(도급, 용역,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, 장비,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제6조(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)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.

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제7조(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)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제6조제1항의 경우: 50억원 이하의 벌금

2. 제6조제2항의 경우: 10억원 이하의 벌금

제8조(안전보건교육의 수강)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충청북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